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2017년 12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2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2. 27.(수)	담당부서	원전환경과
담당과장	안창용 과장(044-203-5340)	담 당 자	박용진 사무관(044-203-5348)

산업부, 방사성폐기물 관리·원전해체 비용 인상 고시

- 중·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1,219만원 → 1,373만원, 12.6% 상승, 원전해체 충당금 1호기당 6,437억원 → 7,515억원, 16.7% 상승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백운규)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(총5회) 중·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,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.

구분	2015년	2017년	증가율
중·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	1,219만원	1,373만원	12.6% ↑
원전해체 비용 충당금	6,437억원	7,515억원	16.7% ↑

○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규정(現 고시, '15.6월)하고 있다.

□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(한수원),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고, 재무, 회계, 환경, 원자력, 에너지경제,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방폐물 관리비용을 산정하였다.

○ **중·저준위 방폐물 비용(200L 드럼당)**은 2015년 고시한 1,219만원에서 2017년에는 12.6% 인상한 1,373만원으로 재산정하여 고시하였다.

Indus

- 비용 상승요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(제99조)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후 관리기간 확대(100년 → 300년),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.

○ 중·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**방사성동위원소(RI) 방폐물 관리비용(200L 드럼당)은**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원에서 최고 2,743만원이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,983만원으로 고시하였다.

- 특히,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%에서 20%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.

○ **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**은 2015년 고시한 6,437억원에서 2017년에는 16.7% 인상한 7,515억원으로 재산정하였다.

- 상승요인으로는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·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,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.

○ 다만, **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**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*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**이 어려워,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***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하였다.

* 원전운영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되어 발생량은 약23% 감소 추정
**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개수, 처분부지 면적, 처분용기 필요량, 운영기간 등이 달라져 총사업비 재산정 필요
***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소요비용 : 경수로형 319,814천원, 중수로형 13,202천원

□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*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.

*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, 폐쇄후 관리기간은 300년임,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진행중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용진 사무관(☎ 044-203-53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2017년 방폐물 관련 비용 고시 신·구조문대비표**

□ 신・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

제4조(중・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) 중・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1,219만원이며, 「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</td><td>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금액

제4조(중・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) ---------- 1,373만원---------- ----------.</td></tr>
<tr><td>제5조(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) ①(생략)

<table><tr><th colspan="3">구 분</th><th>관리비용 (200L, 만원)</th></tr><tr><td rowspan="9">개봉 선원 폐기물</td><td colspan="2">가연성폐기물</td><td>92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비가연성폐기물</td><td>37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비압축성폐기물</td><td>1,219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폐필터</td><td>869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폐액</td><td>유기폐액</td><td>2,232</td></tr><tr><td>혼합폐액</td><td>1,636</td></tr><tr><td>무기폐액</td><td>1,648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건조 동물사체</td><td>92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냉동 동물사체</td><td>1,013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밀봉선원 폐기물</td><td>2,743</td></tr></table>
② (생략)

③ 또한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로 폐기시 관리비용을 10%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단, 표준용기 개발 및 관련 고시(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)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.</td><td>제5조(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) ①(현행과 같음)

<table><tr><th colspan="3">구 분</th><th>관리비용 (200L, 만원)</th></tr><tr><td rowspan="9">개봉 선원 폐기물</td><td colspan="2">가연성폐기물</td><td>1,049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비가연성폐기물</td><td>431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비압축성폐기물</td><td>1,539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폐필터</td><td>762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폐액</td><td>유기폐액</td><td>2,493</td></tr><tr><td>혼합폐액</td><td>1,828</td></tr><tr><td>무기폐액</td><td>1,764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건조 동물사체</td><td>1,127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냉동 동물사체</td><td>1,187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밀봉선원 폐기물</td><td>2,983</td></tr></table>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----- 20% ---------- ---------. <단서 삭제></td></tr>
<tr><td>제4장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</td><td>제4장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</td></tr>
</table>

Indus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12조(추정비용)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은 2014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.
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정비용 (2014년말 기준)</th></tr><tr><td>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/호기</td><td>6,437억원</td></tr></table></td><td>제12조(추정비용) ---------- ---------- 2016년말 ----------.
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정비용 (2016년말 기준)</th></tr><tr><td>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/호기</td><td>7,515억원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13조(물가상승률 및 할인율) (생략)
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>물가상승률</td><td>1.40%</td></tr><tr><td>할인율 및 이자율</td><td>3.55%</td></tr></table></td><td>제13조(물가상승률 및 할인율) (현행과 같음)
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>물가상승률</td><td>1.21%</td></tr><tr><td>할인율 및 이자율</td><td>2.94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1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td><td>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2019년----------.</td></tr>
</table>